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나389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석경희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9. 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2가소10497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공제금 지급

가.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 C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제금으로 4,050,000원을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 차량의 과실이 90%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3,6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장소 및 그 주변 도로의 형상, 이 사건 사고 직전 양 차량의 진행 상태 및 속도, 당시 그 주변의 교통 상황, 양 차량의 충돌 부위,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미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차로 변경을 마친 후 피고 차량보다 앞서 주행하던 차량이 긴급자동차를 보고 정차하자 피고 차량도 뒤를 이어 정차하였으나 원고 차량이 충격한 점, 피고 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한 것은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한숙희, 판사 전경민, 판사 김동현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공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자동 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입니다.

2. 사고개요

가. 사고 일자: 2021. 8. 14. 12:39경

나. 사고 장소: 서울 종로구 광화문

다. 사고 경위: 피고 차량은 교차로 앞 실선 구간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고, 제동하였고, 1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추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입니다.

3. 원고의 보험금 지급

D위원회 심의결정에서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 아 원고 차량의 과실을 100%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D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4,050,000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